

##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4월 16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사업의 명칭 : 북아현동 1-356 외 1필지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
2.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
  - 성 명 : 손민기, 이혜숙, 삼우종합건설(주)
  -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14  
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14길 7  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0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-356 외 1필지
4. 사업시행면적 : 863.00 $m^2$
5. 주택건설 규모 및 용도
  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5층 / 3개동 / 연면적 1,613.715 $m^2$
  - 용 도 : 도시형생활주택(단지형다세대:47세대)
6. 사업시행기간 : 사업계획승인일 ~ 2026. 05. 10.(예정)
7. 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
 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  -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8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: 2024. 4. 16.